

# 2007. 1. 1기준 개별주택정정가격 결정 · 공시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. 1. 1기준 개별주택 정정가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 · 공시합니다.

2008년 4월 3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

## 1. 개별주택가격 결정 · 공시

- 가. 결정 · 공시일 : 2008년 4월 30일
- 나. 공 시 대 상 : 2007. 1. 1 기준 개별주택 정정가격 1호
- 다. 결정 · 공시사항 : 개별주택 가격 정정

연번	소재지	구조	당초가격 (천원)	정정가격 (천원)	정정사유
1	산하동 192-1	경철	43,200	49,300	토지 산정면적 정정 (당초 380㎡ → 변경 480㎡)

## 2. 이 의 신 청

- 가. 기 간 : 2008. 4. 30 ~ 5. 30
- 나. 신 청 자 : 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
- 다. 신청장소 : 북구청 지방세과(과표팀)
- 라.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 및 북구청 지방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상주택의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

## 3.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
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 (과표팀 ☎219-7266, 219-727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